

강원도립대학교 수업반 편성 규정

(제정) 2007-04-25 규정 제179호

(개정) 2010-02-08 규정 제225호

(개정) 2013-12-09 규정 제342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신청 수업반 편성을 규정하고,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수업반 편성단위) ① 학과의 전공 수업반은 40명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9>

② 교양교과목의 수업반 편성은 과목특성에 따라 수강인원을 결정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12.9>

제3조(분반기준) 수업반 분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<전문개정 2013.12.9>

1. 전공교과 : 수강인원 40명 기준으로 한다.
2. 교양교과 : 학과단위로 개설한다.
3. 단, 교과목 특성에 따라 “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”를 거쳐 합반 또는 분반하여 편성할 수 있다.

제4조(편성운영) 위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 수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,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학처에서 적의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8.> <개정 2016.4.25.>

부 칙(2007. 4. 25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2. 8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